5. 지위승계신고

01 적용대상과 법적근거

신고 대상	• 「생화학무기법」제7조제1항은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에게 지위승계 신고 의무를 부과 – 소속 · 형태 불문: 기업,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의료기관 등 – 대상자: 기존 신고제조자(생물작용제·독소 제조신고자)의 지위를 상속·양수·합병으로 승계하는 자(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신설법인) – 신고서 제출처 : 산업통상부 – 신고서 수리기관: 산업통상부장관
신고기한	• 상속일·양도일·합병일부터 30일 이내
유의사항	• 결격사유가 있으면 수리 불가(제6조, 제7조제2항) • 미신고 시 제조정지·폐쇄 등 행정처분 가능, 별도로 과태료(최대 1천만원) 부과 대상(제8조의2제1항제4호)

02 신고 의무 사항

누가?	•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 신고제조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 **양수인** • 신고제조자(법인)가 합병한 경우 →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언제까지?	• **상속일·양도일·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지위는 **수리 후** 상속·양도·합병일로 **소급하여 승계**되나, 미신고 시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
어디에?	• **산업통상부장관**
어떻게?	•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접수)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접수)**

5. 지위승계신고

03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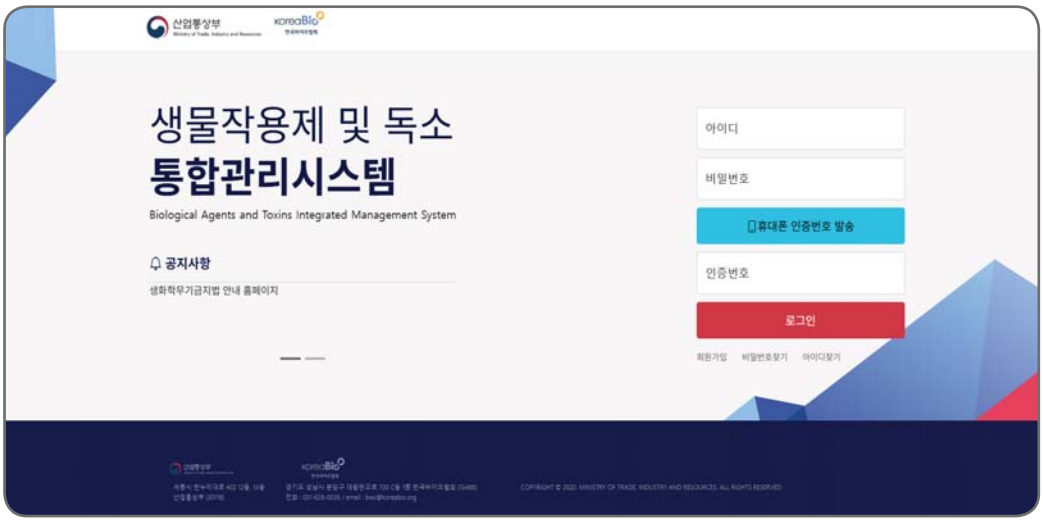
단계	검토 사항	비 고
대상 여부 확인	• 법령상 지위승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법 제7조제1항
	• 결격사유 대상 여부 확인	• 법 제6조, 제7조제2항
기한 산정	• 상속일·양도일·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법 제7조
서류 준비	•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 첨부서류(각1부) 1.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온라인 -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 기관 계정 필요 • 연말 기준 보유현황 보고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또는	
	• 오프라인 - 담당 부서로 우편·방문 접수	• 산업통상부
수리 후 의무	• 정기 보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직전 연말 기준 보유현황을 보고	• 시행령 제9조의2
	• 변동 관리: 사용 · 양도 · 폐기 등 보유량 변동은 정기 보고 시 반영하고, 관련 별도 신고·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름	• 법 제7조, 제9조, 제10조
	• 현장 검사: 정기/수시검사 대상	• 법 제18조의2

※ 법: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04 | 신고 방법(서식 작성 요령)

4.1 (온라인)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1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https://batims.or.kr/login



2 “지위승계신고 신청하기” 클릭



5. 지위승계신고

3 신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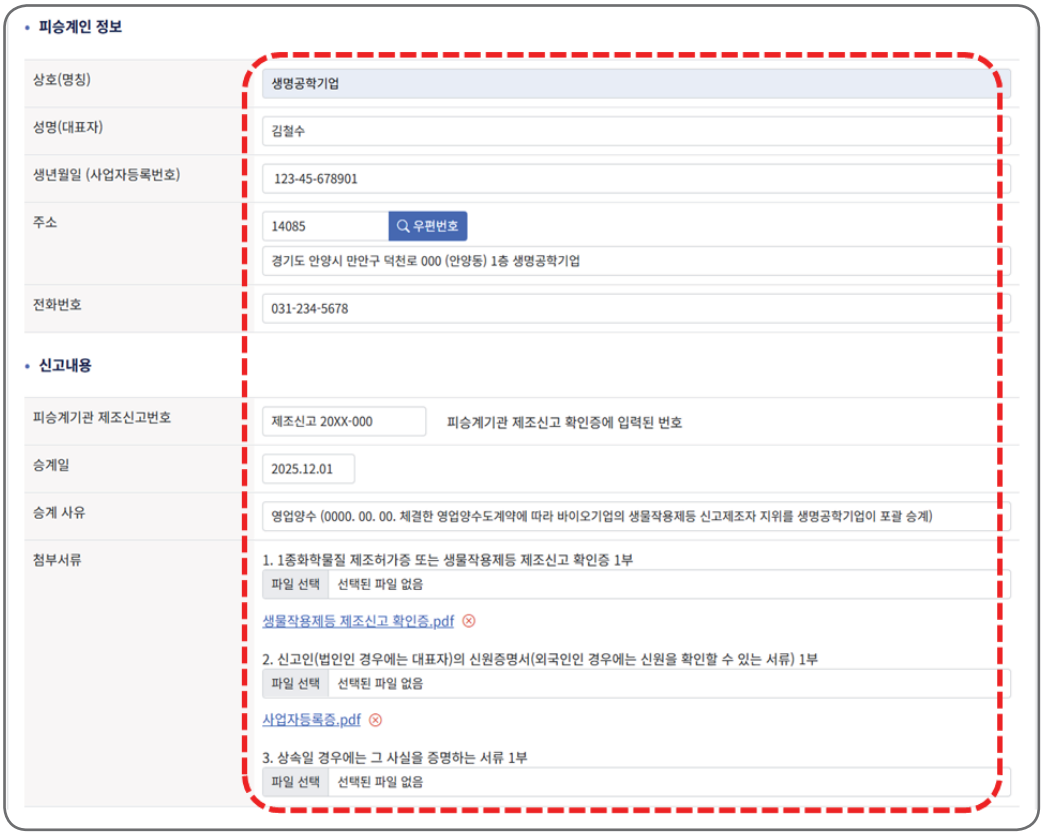
❶ 담당자 정보 – 자동 생성



❷ 신고인 정보 – 자동 생성



❸ 피승계인 정보 및 신고내용 – 해당 사항 기입



• 피승계인 정보

상호(명칭)	생명공학기업
성명(대표자)	김철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1
주소	14085 우편번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000 (안양동) 1층 생명공학기업
전화번호	031-234-5678

• 신고내용

피승계기관 제조신고번호	제조신고 20XX-000 피승계기관 제조신고 확인증에 입력된 번호
승계일	2025.12.01
승계 사유	영업양수 (0000. 00. 00.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바이오기업의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를 생명공학기업이 포괄 승계)
첨부서류	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pdf ⊗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사업자등록증.pdf ⊗ 3.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❹ (해당시)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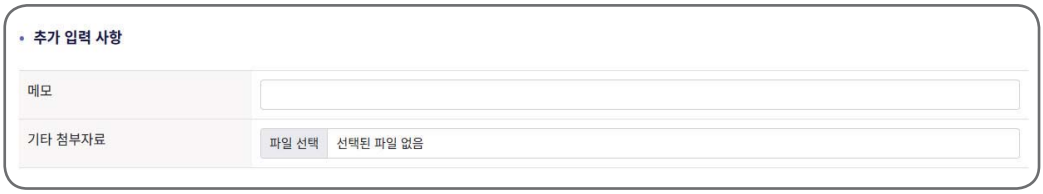


•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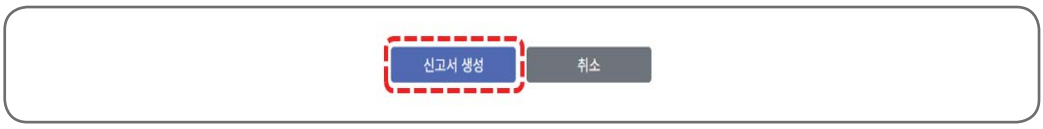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고 사유가 합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신고일	2025.12.01
신고인	홍길동

5. 지위승계신고

❺ (필요시) 추가 입력 사항



❻ 신고서 생성 클릭



4 신고서 업로드



① 신고서 생성 후 파일을 다운로드 후 대표자 직인 날인 및 스캔

②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

③ 접수요청 클릭

※ 수정이 필요한 한 경우에는 “신고서 업로드”의 하단에 수정 클릭

4.2 (오프라인) 산업통상부 방문접수

●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에 방문접수**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V]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바이오기업*	
	성명(대표자) *홍길동*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1*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1층 바이오기업*	전화번호 *000 - 000 - 0000*
피승계인	상호(명칭) *생명공학기업*	
	성명(대표자) *김철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000 (안양동) 1층 생명공학기업*	전화번호 *000 - 000 - 0000*

승계일 *0000 년 00 월 00 일*

승계 사유 *영업양수 (0000. 00. 00.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바이오기업의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를 생명공학기업이 포괄 승계)*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김 철 수*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 1부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 사유가 합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 검 토 → 기안·결재 →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발급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5. 지위승계신고

4.3 첨부서류

※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의 첨부서류	
첨부서류	•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 1부** ▸ 원본 제출
	•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현재 신원증명서는 직접 제출할 수 없으므로 한시적으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여 제출)
	•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일반적인 상속 – 기본증명서(상세, 사망기재) – 피승계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승계인 기준(상속인 범위 확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사업·지위를 ○○에게 승계) 또는 모든 상속인 위임장/동의서 ▸ 유언이 있는 경우(공정증서 유언) – 기본증명서(사망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유언공정증서 사본(해당 지위·영업 일체 상속 명시) – (필요 시) 유언집행자 확인서류 ▸ 자가필(자필증서) 유언이 있는 경우 – “일반적인 상속”과 동일 서류 – 가정법원 검인/확인 관련 서류(유언 효력 입증) ▸ 공동상속(배우자·자녀 등) → 1인에게 지위 일임 – 기본증명서(사망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전원 서명·날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 상속인 중 미성년자 포함 – “일반적인 상속” 또는 “공동상속(배우자·자녀 등) → 1인에게 지위 일임” 서류 – 법정대리인 관계 증빙(가족관계증명 등) – (필요 시) 가정법원 허가 관련 서류(협의 분할·위임이 필요한 경우) ▸ 해외 사망·해외 상속인 – 해외 사망증명서/출생·혼인증명 등 관계 서류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와의 연결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외국 공문서의 공인인증(Apostille) 및 한글 공증 번역문 제출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 사유가 합병인 경우만 해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를 직접 확인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발급일 3개월 이내) 원본 1부 첨부

4.4 제출전 (자가) 점검표

● 기본 정보·적용 대상 확인

☐	• 이번 건이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	• 승계일(D)을 객관적 기준일(상속개시일·양도 효력발생일·합병등기일 등)로 특정했다.
☐	• D+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었다.

● 서식 작성 사항(필수 기재)

☐	• 서식 상단에서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항목을 선택(체크)했다.
☐	• 신고인(승계인) 기본정보(상호/대표자/등록번호·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했다.
☐	• 피승계인(종전 신고제조자) 기본정보를 정확히 기재했다.
☐	• 승계사유(상속/양수/합병) 및 승계일(D)을 명확히 기재했다.

● (상황별)첨부서류 준비

☐	•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피승계인 명의)을 첨부했다.
☐	• 신고인(대표자) 신원증명서를 첨부했다(외국인은 신원확인 가능한 서류). ※ 현재 신원증명서는 직접 제출할 수 없으므로 한시적으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여 제출
☐	• 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 증명서류(기본증명서(사망기재), 가족관계증명서, 협의서/위임장 등)를 준비했다.
☐	• 합병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합병 증빙을 준비했다.
☐	• 해외 서류는 번역·아포스티유/공증서류를 갖추었다(해당 시).
☐	• 제출 형식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인적사항(성명·번호·주소)의 일치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

5. 지위승계신고

● **수리 요건·결격사유 사전 점검**

☐	① 최근 3년 내 허가취소·제조폐쇄 명령 전력이 없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다.
☐	③ 파산 미복권 상태가 아니다.
☐	④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미경과가 아니다.
☐	⑤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다.
☐	⑥ 법인 임원 중 위 결격자(①~⑤)가 없다.

4.5 자주 묻는 질문(FAQ)

Q1	**30일을 넘겼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지체 없이** 신고하시고, 사유서를 준비하세요. 미신고는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지위승계신고 '30일 이내'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30일 이내"는 달력 기준의 연속일수(calendar days)로 계산하므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마지막 날(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익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며,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취급됩니다. **연속 공휴일이면, 공휴일이 아닌 날까지 순차로 익일 연장**됩니다.
Q3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제조를 중단해야 하나요?**
A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됩니다. 다만 미신고·보완 지연으로 제재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보완을 신속히 이행하십시오.
Q4	**지위승계신고는 '간주 규정'**이 없나요?
A	제7조제2항 자체에는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05 유의사항(법 위반 시 제재)

「생화학무기법」 제7조 '지위승계'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될 처벌 규정

5.1. 위반 사례

● **30일 이내 지위승계신고를 누락한 경우(법 제7조제1항)**

30일 초과 신고(지연 신고)	
사례	신고제조자가 2025년 7월 1일 사망(또는 7월 1일 영업양도, 7일 1일 합병)했는데, 상속인/양수인/존속법인이 8월 1일 이후에야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음
근거	법 제7조제1항(30일 이내 신고)

승계일을 잘못 기재해 기한 초과로 처리되는 경우(지연 신고)	
사례	계약서상 체결일을 승계일로 기재했으나 실제 양도 효력 발생일이 달라, 30일 기산일(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시작일) 계산 오류 발생 ☞ 승계일 오기재로 신고기한 오류
근거	법 제7조제1항(30일 이내 신고)

● **결격사유가 있는 승계인이 신고한 경우(법 제6조, 법 제7조제2항)**

결격사유가 있는 승계인의 신고(수리 불가)	
사례	양수법인의 임원 중 금고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자가 있는 경우 또는 파산 미복권, 피성년후견인 임원이 존재하는 경우
근거	제6조(결격사유), 법 제7조제2항(적합하면 수리·결격이면 불수리)

● **제도 오해로 인한 신고 면제 착각한 경우(특례 규정 오인)**

특례 규정 오인	
사례	법 제19조의 특례 대상 기관이 제7조의 지위승계 신고 면제 오인
근거	법 제19조의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립 연구시설에 한하여, 제5조의2(제조신고)를 일정량 범위에서 면제하는 규정 → 제7조(지위승계 신고)는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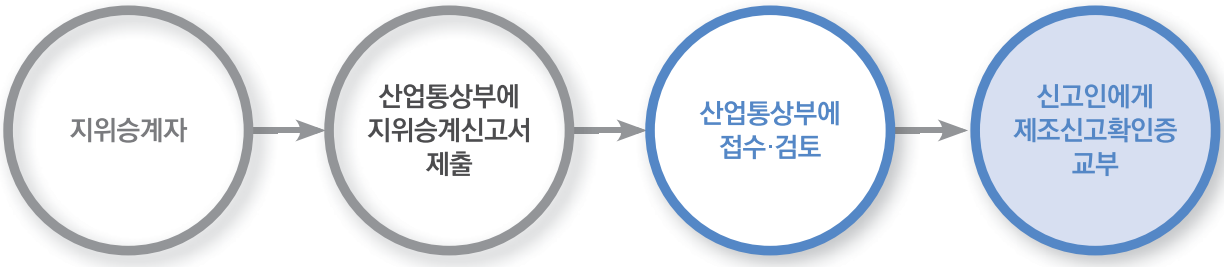
5. 지위승계신고

5.2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

지위승계 미신고 경우	
행위	상속·양도·합병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불이행
조항	제7조제1항
벌칙	• 법 제30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5조 [별표5] ☞ 과태료 500만원
행정처분	•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정지(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함

06 생물작용제등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자가) 점검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 승계사유 발생일 확인 ☞ 상속개시일/영업양도 효력일/합병등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	• 결격사유 사전점검 ☞ 임원 구성·대표자가 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정기/수시 검사 대비 보안관리 · 장부 비치 등을 유지하고 있다.

07 「생화학무기법」 법령

「생화학무기법」 [법률 제21065호]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8조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 지위승계신고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3호 ·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제1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 · 기록 · 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6.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7.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신고제조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5. 지위승계신고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0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3호	500
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250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1호]

제3조(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 사유가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